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3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을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각각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7제5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9의 제목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을 “(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

설기계”로,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을 ““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를 각각 “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별”을 “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별”로 한다.

제79조의10의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충전시설”로 한다.

제79조의11의 제목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전기자동차 등의 성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 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종류·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제7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행거리”를 “주행거리(전기자동차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간”을 “시간(전기자동차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자동차 성능”을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성능”으로 한다.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으로 하고, 제목란 다음에 “I. 저공해자동차”를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4호가목의 비고 및 제5호가목의 비고의 “법 제50조제1항”을 각각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제7호가목 및 제8호가목의 측정방법란 중 “법 제50조제1항”

을 각각 “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6의2에 II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I.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

1. 2023년 6월 28일 이후

가. 전기건설기계 및 수소전기건설기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0g/kWh 이하	0g/kWh 이하	0g/kWh 이하	0g/kWh 이하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방법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전기엔진 또는 수소전기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원동기 배출가스 기준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기준이 각각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원동기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	--	--

비고

1.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저감효율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전기엔진 또는 수소전기엔진 저감효율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저공해엔진과 배터리 등 주요 전기 장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기술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과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경유자동차를 가스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
 - 나. 건설기계의 원동기를 경유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별표 10의2 제3호가목2)다)(1) 중 “ $2,403\text{kcal}/\text{Sm}^3(270\text{BTU}/\text{Sft}^3)$ ”를 “ $2,579\text{kcal}/\text{Sm}^3(290\text{BTU}/\text{Sft}^3)$ ”로, “ $196\text{kcal}/\text{Sm}^3(22\text{BTU}/\text{Sft}^3)$ ”를 “ $64\text{kcal}/\text{Sm}^2(24\text{BTU}/\text{Sft}^2)$ ”로 하고, 같은 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다)의 기준을 따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가)(2)(가) 중 “ $2,403\text{kcal}/\text{Sm}^3(270\text{BTU}/\text{Sft}^3)$ ”를 “ $2,579\text{kcal}/\text{Sm}^3(290\text{BTU}/\text{Sft}^3)$ ”로, “ $196\text{kcal}/\text{Sm}^3(22\text{BTU}/\text{Sft}^3)$ ”를 “ $64\text{kcal}/\text{Sm}^2(24\text{BTU}/\text{Sft}^2)$ ”로 하고, 같은 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2)의 기준을 따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1에 비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태풍, 호우, 한파, 폭염 등의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재난 발생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8의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용연료란의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란의 “모든 자동차”를 각각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로 한다.

별표 21의2의 제1호가목의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별지 제36호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 소 (전화번호:)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 건설기계 제원	⑦건설기계 제작사 (제작연도)	⑧건설기계 종류	⑨건설기계 규격	⑩건설기계 형식	⑪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⑫전기 공급방식
	⑬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⑭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⑮주 배터리 에너지밀도 (Wh/L)	⑯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kW)	⑰외부전원 사용전력 (kW)	⑱건설기계 자체 중량
	⑲충전구 규격	⑳최대속도	㉑구동형태	㉒구동모터형식		㉓유압 제원
				정격출력(kW): 최대토크(kg·m):		정격압력(bar): 최대유량(L/min):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에 따라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종류·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 --- ----- -----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국립환경과학원장</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 ----- ----- ----- ----- <u>환경부장관</u> ----- ----- ----- -----. ----- ----- ----- -----.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79조의3(<u>저공해자동차의 자금</u> <u>의 보조 및 용자기준</u>) 법 제58 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 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u>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u>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략) 2. <u>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u> 3. <u>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 리 등 성능</u> 4. (생략) 5. 그 밖에 <u>저공해자동차의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하여</u>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7(<u>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세입의 사용</u>) 법 제58 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 다. 1. ~ 4.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u>저공해자동차 등의 자 금 보조 및 용자기준</u>) ----- ----- -----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 기계 판매가격</u> ----- -----. 1. (현행과 같음) 2.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u>----- 3.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u>--- 4. (현행과 같음) 5. -----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u>----- ----- -- 제79조의7(<u>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세입의 사용</u>)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u>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u>	5.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u>----- ----- -----
제79조의9(<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u>)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u>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u>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u>”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u> 위치 및 상태 2. <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u> 종류 3. <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u>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u>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별</u>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	제79조의9(<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u>) ① ----- ----- ----- <u>자동차 또는</u>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u>건설기계</u>----- “<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시설</u>”----- -----. 1. <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u> <u>시설</u> ----- 2. <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u> <u>시설</u> ----- -- 3. <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u> <u>시설</u> ----- 4. <u>무공해자동차등의 연료공급</u> <u>시설별</u> ----- ----- -----

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략)

제79조의10(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11(전기자동차 성능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받으려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0(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① -----

-----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충전시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

② -----
-----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충전시설-----

-----.

제79조의11(전기자동차 등의 성능평가) ① -----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

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
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
부

성능 평가를 -----
----- 별지 제36호의6 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10 서식의 --

-----.

1. 전기자동차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
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
터리의 제작서·종류·용
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
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
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
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
량·에너지밀도 및 자체시
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3. <u>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u> 4. <u>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u>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u>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1회 충전 시 주행거리</u> 2. <u>충전에 걸리는 시간</u> 3. 그 밖에 <u>전기자동차의 성능</u>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u>전기자동차 성능 평가</u>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원동기의 제작서·종류·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u> <u>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u> <삭 제> <삭 제> ② ----- <u>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u>----- 1. ----- <u>주행거리(전기자동차에 한한다)</u> 2. ----- <u>시간(전기자동차에 한한다)</u> 3. ----- <u>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u>----- ③ ----- <u>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의 성능</u> -----
--	---